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208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2
- 정선군 고시 제2020-209호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4
- 정선군 고시 제2020-210호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9
- 정선군 고시 제2020-221호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규약 고시.....17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993호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24
- 정선군 공고 제2020-1016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26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208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12호(1987. 9. 0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1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변경)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	금회 시행	
공원	임계3 어린이공원	2,441	■ 임계3 어린이공원 변경 조성 A=2,441.0㎡ - 편익시설 18.0㎡ - 유희시설 322.0㎡ - 운동시설 150.0㎡ - 기반시설 893.0㎡ - 녹지 및 기타 1,058.0㎡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임계면 송계리	280-30	구거	124.0	124.0	-	농림축산 식품부	-	-	-
2	임계면 송계리	497-2	도로	5.0	5.0	-	국 (건설부)	-	-	-
3	임계면 송계리	640-50	도로	90.0	90.0	-	국 (건설부)	-	-	-
4	임계면 송계리	679	답	446.0	122.2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임계면 송계리	683-2	공원	13.0	13.0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임계면 송계리	686-1	답	455.0	300.0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임계면 송계리	689-1	공원	285.0	28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임계면 송계리	691-1	공원	685.0	68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9	임계면 송계리	692-2	공원	772.0	770.9	봉양3길 21	정선군	-	-	-
10	임계면 송계리	692-3	답	174.0	1.9	봉양3길 21	정선군	-	-	-
11	임계면 송계리	696-3	공원	44.0	44.0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11필지		3,093.0	2,441.0					

정선군 고시 제2020-209호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정선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한 야생화쿠키체험장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일원

다. 면 적 : 49,221㎡ (지구단위계획구역 : 46,030㎡, 군계획시설(도로) : 3,191㎡)

라. 사 업 시 행 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9,221	-	49,221	100.0	
관리 지역	소 계	46,252	-	46,252	94.0	
	보전관리지역	222	-	222	0.5	
	계획관리지역	46,030	-	46,030	93.5	
농림지역		2,969	-	2,969	6.0	

②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2	50	8~13	국지 도로	340	소로 2-지414호선 (산216-16임)	소로 1-1호선 (고한리 5-26 잡)	일반 도로	-	강원도 고 시 제2013-230호 (2013. 6.7)	진 입 도 로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삼탄광산 아트밸리 조성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46,030	-	46,030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소 로	1	1	10	국지 도로	458	소로 2-50호선 (고한리5-26 잡)	고한리 5-26잡	일반 도로	-	강원도 고시 제2013-230호 (2013. 6.7)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구 번 호		가 구		비 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46,030	
I	관광휴양시설용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8,407	
II	공공시설용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035	
III	녹지용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588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번 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	46,030	
I. 관 광 휴 양 시 설 용 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8,407	
I-1	탄광체험시설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0,277	
I-2	탄광체험시설②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6,964	
I-3	탄광체험시설③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166	
II. 공 공 시 설 용 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035	
II-1	Main Gate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254	
II-2	오수처리장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99	
II-3	광장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2,151	
II-4	광장②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892	
II-5	주차장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2,167	
II-6	보행자도로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2,490	
II-7	도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4,564	
II-8	보행자도로②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318	
III. 녹 지 용 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588	
III-1	조경녹지①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79	
III-2	조경녹지②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325	
III-3	조경녹지③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67	
III-4	조경녹지④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28	
III-5	원지형녹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989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 -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숙소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I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I -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나.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I -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숙소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I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I -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권 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 채 (권 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정선군 고시 제2020-210호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생활권 공원시설의 균형배분 및 적정 유치거리 확보를 통해 거주민 휴게공간 확충 및 쾌적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용지 내 어린이공원 추가 신설

나.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계획관리지역	155,436	-	155,436	100.0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㉔	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량면 구절리 290-52번지 일원	155,436	-	155,436	강고 제27호 (2008.2.22.)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 변경 없음

구 분		합 계		1류		2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15	3,193	4	462	9	2,597
중로	변경	1	1,062	-	-	1	1,062
소로	변경	14	2,131	4	462	8	1,535

(2)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간선도로	1,062	여량면 구절리 312-3	여량면 구절리 248-4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8	여량면 구절리 290-116	여량면 구절리 290-82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34	여량면 구절리 290-82	여량면 구절리 290-1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73	여량면 구절리 284-9	여량면 구절리 290-1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17	여량면 구절리 273-5	여량면 구절리 276-12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930	여량면 구절리 312-9	여량면 구절리 254-6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6	여량면 구절리 290-21	여량면 구절리 282-2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9	여량면 구절리 273-1	여량면 구절리 290-1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0	여량면 구절리 290-23	여량면 구절리 산244-3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10	여량면 구절리 278	여량면 구절리 산244-4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12	여량면 구절리 273-15	여량면 구절리 279-3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2	7	6	국지도로	112	여량면 구절리 산219-3	여량면 구절리 266-48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46	여량면 구절리 268-1	여량면 구절리 268-10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83	여량면 구절리 산219-3	여량면 구절리 산216	일반 도로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소로	3	2	5	특수도로	51	여량면 구절리 290-10	여량면 구절리 산244-26	보행 자전 용		강고 제27호 (2008.2.22)	

(3) 주차장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	-	5,128	-	5,128	-	
기정	①	노외 주차장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50-9번지 일원	1,275	-	1,275	정고 제93호 (2019.05.17)	
기정	②	노외 주차장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75번지 일원	733	-	733	정고 제93호 (2019.05.17)	
기정	③	노외 주차장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68-1번지 일원	735	-	735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④	노외 주차장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72-1번지 일원	2,385	-	2,385	정고 제93호 (2019.05.17)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685	-	3,877	-	
기정	①	공 원	소공원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1번지 일원	484	-	484	정고 제93호 (2019.05.17)	
기정	②	공 원	소공원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78번지 일원	1,201	-	1,201	정고 제93호 (2019.05.17)	
신설	①	공 원	어린이 공원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68-1번지 일원	-	2,192	2,192	금회	

■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어린이 공원	- 신설 - A:2,192m²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거주민들의 휴게공간 확충 및 쾌적성 증대를 위한 어린이공원 신설

(2) 녹지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20,560	-	20,560		
기정	①	녹지	경관 녹지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05번지 일원	14,753	-	14,753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②	녹지	경관 녹지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86번지 일원	183	-	183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③	녹지	경관 녹지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19번지 일원	732	-	732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④	녹지	경관 녹지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19-2번지 일원	328	-	328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⑤	녹지	경관 녹지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66-1번지 일원	419	-	419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⑥	녹지	경관 녹지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66-1번지 일원	1,175	-	1,175	강고 제27호 (2008.2.22.)	
기정	⑦	녹지	경관 녹지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14번지 일원	2,970	-	2,970	강고 제27호 (2008.2.22.)	

(3) 광장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광장	경관 광장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312-2번지 일원	1,110	-	1,110	강고 제27호 (2008.2.22.)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하수종말 처리장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1번지 일원	762	-	762	강고 제27호 (2008.2.22.)	

라) 방재시설

(1) 하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폭원(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천	-	여량면 구절리 산224번지 일원	여량면 구절리 273-20번지 일원	-	194	8.5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155,436	-	155,436	-	
A	주거용지	88,319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12번지 일원	86,127	감)2,192	
B	상업용지	2,686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82번지 일원	2,686	-	
C	녹지용지	23,610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 205번지 일원	25,802	증)2,192	
D	공공시설용지	40,821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10번지 일원	40,821	-	

나)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합 계			155,436	-	155,436	-	
기정	변경	주거용지 소계	88,319	-	86,127	감)2,192	
A1-1	A1-1	단독주택용지	5,516	구절리 산 244-1번지 일원	5,516		
A1-2	A1-2	단독주택용지	2,667	구절리 279-4번지 일원	2,667		
A1-3	A1-3	단독주택용지	3,072	구절리 280-2번지 일원	3,072		
A1-4	A1-4	단독주택용지	5,977	구절리 276-7번지 일원	5,977		
A1-5	A1-5	단독주택용지	14,538	구절리 2 77-34번지 일원	14,538		
A1-6	A1-6	단독주택용지	1,473	구절리 272-5번지 일원	1,473		
A1-7	A1-7	단독주택용지	10,434	구절리 266-19번지 일원	8,242	감)2,192	공원면적 증가로 인한 주거용지 면적감소
A1-8	A1-8	단독주택용지	3,766	구절리 266-2번지 일원	3,766		
A1-9	A1-9	단독주택용지	6,618	구절리 254-7번지 일원	6,618		
A1-10	A1-10	단독주택용지	3,952	구절리 252-6번지 일원	3,952		
A1-11	A1-11	단독주택용지	2,698	구절리 250-1번지 일원	2,698		

도면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A1-12	A1-12	단독주택용지	847	구절리 2 78-1번지 일원	847		
A1-13	A1-13	단독주택용지	11,415	구절리 276-1번지 일원	11,415		
A2-1	A2-1	근린생활 시설용지	2,496	구절리 290-57번지 일원	2,496	-	
A2-2	A2-2	근린생활 시설용지	3,746	구절리 282-6번지 일원	3,746	-	
A2-3	A2-3	근린생활 시설용지	1,768	구절리 312-5번지 일원	1,768	-	
A2-4	A2-4	근린생활 시설용지	2,421	구절리 290-3번지 일원	2,421	-	
A2-5	A2-5	근린생활 시설용지	2,644	구절리 290-34번지 일원	2,644	-	
A2-6	A2-6	근린생활 시설용지	2,271	구절리 281-9번지 일원	2,271	-	
기정	변경	상업용지 소계	2,686	-	2,686	-	
B1-1	B1-1	상업용지	2,686	구절리 290-82번지 일원	2,686	-	
기정	변경	녹지용지 소계	23,610	-	25,802	증)2,192	
C1-1	C1-1	광 장	1,110	구절리 312-2번지 일원	1,110	-	
C2-1	C2-1	경관녹지	20,560	구절리 산 205번지 일원	20,560	-	
C3-1	C3-1	소공원	484	구절리 290-1번지 일원	484	-	
C3-2	C3-2	소공원	1,201	구절리 278번지 일원	1,201	-	
-	C3-3	어린이공원	-	구절리 268-1번지 일원	2,192	증)2,192	어린이공원 신설
기정	변경	공공시설용지 소계	40,821	-	40,821	-	
D1-1	D1-1	도 로	33,318	구절리 290-10번지 일원	33,318	-	
D2-1	D2-1	주 차 장	1,275	구절리 250-9번지 일원	1,275	-	
D2-2	D2-2	주 차 장	733	구절리 290-75번지 일원	733	-	
D2-3	D2-3	주 차 장	735	구절리 268-1번지 일원	735	-	
D2-4	D2-4	주 차 장	2,385	구절리 272-1번지 일원	2,385	-	
D3-1	D3-1	하수종말처리장	762	구절리 290-1번지 일원	762	-	
D4-1	D4-1	소 하 천	1,613	구절리 산 219-2번지 일원	1,613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1 ~ A1-1 3	여량면 구절리 312-5 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당해용도 2,000㎡미만)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50%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태(권장)		◦지붕 : 경사지붕 (경사지붕 구배 : 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 장)		◦외벽의 색채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 권장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건 축 선		◦중로2-1, 소로1-3, 소로3-2, 소로1-4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소로2-1, 소로2-5에 접한 면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A1-1, A1-2, A1-4에 한함) ◦A1-10, A1-11가구의 동측 경계부에 건축한계선 2m 지정 ◦A1-8가구의 남측 및 동측 경계부에 건축한계선 5m 지정
기정	A2-1 ~ A2-6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56 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당해용도 2,000㎡미만)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숙박시설(3층, 연면적 660㎡이하에 한함)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권장)		◦지붕 : 경사지붕 (경사지붕 구배 : 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 장)		◦외벽의 색채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 권장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건 축 선		◦중로2-1, 소로2-1, 소로1-3, 소로1-4, 소로3-2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소로1-1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A2-1에 한함)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B1-1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12번 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숙박시설(3층, 연면적 660㎡이하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지붕 : 경사지붕 (경사지붕 구배 : 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 장)		◦외벽의 색채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 권장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건 축 선		◦중로2-1에 접한 면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기정	D2-1 ~ D2-4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68-1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시설 (단, 건축물식(주차빌딩)은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지붕 : 경사지붕 (경사지붕 구배 : 3/10이상, 5/10이하 권장)
			색 채 (권 장)		◦외벽의 색채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 권장 ◦외벽 및 담장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으로 권장
			건 축 선		◦중로2-1, 소로1-3에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동측 경계부에 건축한계선 2m 지정(D2-1에 한함)

다. 군관리계획(구절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
략(정선군청 도시과 비치)

정선군 고시 제2020-221호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제2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정 선 군 수

1. 명 칭 :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규약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나. 설립배경 : 노화연구 및 노화산업을 육성하고 권역별 국립노화연구원 건립과 지역거점 노화연구도시(정선군, 김해시, 순창군, 서귀포시)간 고령화에 따른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설립

다. 참여기관 및 단체

- 자치단체 : 정선군, 김해시, 순창군, 서귀포시
- 산학단체 : 한양대·서울대·경남대 고령사회연구원 및 연구소, 강원도·경상남도·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라. 규약의 주요내용

- 협의회 총칙(명칭·목적·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 협의회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 협의회 임원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
- 협의회 총회 구성 및 회의, 총회의 기능, 의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협의회 운영위원회 관련 구성, 기능, 의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협의회 사무국과 기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협의회 재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운영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협의회는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하며 국제적·공식적으로 한국의 노화연구 도시들을 대표한다.

② 영문표기는 Korea Aging-Research Cities Partnership(약칭 KACP)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고령사회에서도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높은 수준의 건강수명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지역 거점 노화연구도시(이하 “도시” 라 한다) 간 고령화에 따른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의료비, 건강수명, 지역쇠퇴 등의 지역문제 해결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2. 노화연구도시 프로젝트 수행 및 평가 사업
3.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4.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노화연구도시 홍보사업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4조(구성 및 자격) 협의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코자하는 단체로서 한국노화연구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
2. 준회원 :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민간부문/기업 등

제5조(가입절차)

1.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 및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의회 사무국은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정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정회원 신청 도시는 제2항의 통지를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
 2. 협의회 운영 규약(이하 “규약”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3.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협의회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② 준회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3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노화연구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협력의 의무

제8조(포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노화연구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상실) ① 협의회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협의회는 회원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및 사기업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협의회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은 회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임원은 의장도시, 감사도시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④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된다.

제11조(의장도시 선출) 의장도시는 총회 개최 6개월 전 희망도시를 공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12조(감사도시 선출) 감사도시는 1개 지자체로 두되, 정기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1개 도시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업무 및 회계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의 보고
3. 의장에게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 제시
4. 부정·부당한 행위의 시정 요구

제4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제4조에서 정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 개최지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개최 도시는 총회를 주관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6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국내·외 여건에 따라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 사항을 제시하여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의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계획 또는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위임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6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 이는 의장도시에서 지명한다.

② 의장도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협의회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정보의 교류와 축적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할 수 없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실무협의회) 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검토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
3. 회원 상호 간 정책 공유 및 협의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검토 등

제6장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2조(기타 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둔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는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의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고, 보수 총액은 행정안전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재 정

제24조(회계년도)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원) 협의회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비 등) ① 회비 등은 협의회 은행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비 등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 그 납부 기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7조(세입) 협의회는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정회원 연회비는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 200만원으로 하며,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수입금은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 등으로 한다.

제28조(세출) ① 다음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지출한다.

1. 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비용
 2. 그 밖에 협의회 운영(교육, 훈련,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와 같은 본래 사업과 협의회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운영하거나 실행하는데 사용)에 필요한 경비
- ② 의장도시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의장도시는 회계연도마다 재정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최초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③ 감사도시는 의장도시가 제출한 재정정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해 최초 운영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993호

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규정에 의거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20. 8. 20. ~ 2020. 9. 3.
2.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명 부여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위계	관할 행정구역	비 고
	길이	도로폭	기점	종점	중심선			
임계천봉산자 전거길	2,430m	3m	임계면 봉산리 산79	임계면 봉산리 727	도면 참조	길	정선군	
예비도로명 부여 사유		지명 및 행정구역명 반영(임계천, 봉산리)						

4. 도로명의 부여 절차



5. 의견제출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3-560-2184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제 출 처 : 정선군청 민원과 공간정보팀
- 제출의견 : 예비도로명의 반대 사유, 추천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정선군 공고 제2020-1016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의 조성목표액 변경
-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목표액 변경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조성목표액 “300억” 을 “500억” 으로 변경
 - “3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를 “출연할 수 있다.” 로 변경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 에서 “2025년 12월 15일” 로 연장
- 재무회계규칙의 제명 변경에 따라,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을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변경(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회계과
- 전화 : 033-560-2302
- 팩스 : 033-560-2272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portal/openadmin/adminnews/legislativenotice>

붙임 가.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나.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다. 관계법령 발췌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의 건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300억” 을 “500억”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3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를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2020년 12월 15일” 을 “2025년 12월 15일” 로 한다.

제10조 중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을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생략) ② 기금은 <u>300억원</u> 을 조성목표로 하 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 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u>3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야 한다.</u>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15일</u> 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u>500억</u> ----- ----- ----- ---. ③ ----- ----- ----- <u>출연할 수 있다.</u> ④ ----- <u>2025년 12월 15일</u> 까지로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 용 ·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 <u>정</u> <u>선군 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 ----- ----- ----- 「 <u>정선군 예산 및</u> <u>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